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19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1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이후 발의된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50	민형배	2024. 6.10.	2024. 7.16.
	2200391	서영석	2024. 6.12.	2024. 7.16.
	2200404	김민석	2024. 6.12.	2024. 7.16.
	2200445	복기왕	2024. 6.13.	2024. 7.16.
	2200475	이종배	2024. 6.13.	2024. 7.16.
	2200546	김남희	2024. 6.17.	2024. 7.16.
	2200778	박상혁	2024. 6.21.	2024. 8.20.
	2200982	주철현	2024. 6.26.	2024. 8.20.
	2201011	박수영	2024. 6.27.	2024. 8.20.
	2201276	유동수	2024. 7. 2.	2024. 8.20.
	2201347	장종태	2024. 7. 3.	2024. 8.20.
	2201349	정준호	2024. 7. 3.	2024. 8.20.
	2201360	이훈기	2024. 7. 3.	2024. 8.20.
	2201605	박지혜	2024. 7.11.	2024. 8.20.
	2201773	정일영	2024. 7.16.	2024. 8.20.
	2202023	이수진	2024. 7.19.	2024. 8.20.
	2202925	한병도	2024. 8.19.	2024.11.14.
	2205595	강선우	2024.11.14.	소위 직회부
	2205655	김미애	2024.11.18.	소위 직회부

나. 위 19건의 법률안 중 민형배의원안, 서영석의원안, 김민석의원안, 복기왕의원안, 이종배의원안, 김남희의원안, 박상혁의원안, 주철현의원안, 박수영의원안, 유동수의원안, 장종태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이훈기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수진의원안 등 16건에 대하여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에서 심사함.

다. 이후 3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위 1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4. 11. 21.)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21.)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를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u>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 ----- ----- <u>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 구입비</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